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⑬ - 채산사 · 上

위정척사의 기치를 높이 드신 면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염재 최면식 선생을 봉향하고 있는 사당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채산사 정문과 면암 최익현 선생 초상화.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30호
-지정년월일: 1976.8.27
-시대: 조선말기
-소재지: 신북면 가채리 678
-재료: 목조와즙
-배향인물: 최익현, 최면식

(1) 연혁

채산사는 신북면 가채리에 있다. 구한말의 학자 면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염재 최면식 선생을 봉향하고 있는 사당이다. 본래 채산사는 면암 최익현선생만 봉향해 왔다.

1906년 면암선생이 대마도에서 순국하자 유림들이 그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처음으로 건립하였으나, 1920년 일본군에 의해 훼철되었다. 이후 1935년에 재건하였으나, 다시 1943년에 일본인에 의해 훼철되었다.

해방이후 1949년에 이르러 복원하고 위패와 영정을 봉안해 왔으며 퇴락한 것을 1975년에 해체하여 다시 복원하였다. 이어 1986년에는 포천 유림의 뜻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염재 최면식 선생을 서향하여 종배하였으며, 위패와 영정을 함께 봉안하였다. 현재 채산사의 향사는 매년 음 9월15일 정하여 행한다. 매월 삭일(1일)에는 당직이 분향한다.

(2) 배향인물

-최익현(崔益鉉) 1883(순조 33)~1906

구한말 문신이며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포천현 내북면 가채리(신북면 가채리)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찬겸, 호는 면암, 본관은 경주이다. 의병부 참정 대의 자이며 화서 이항로의 문인이다.

어릴때부터 골격이 비범하고 안광이 빛나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며 4세때 가세가 기울어져 충북 단양으로 아버지를 따라 이주했다. 6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총명함을 보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이우(移寓)의 불운을 겪으면서도 면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스승인 이항로가 역설한 '애군여부 애국여가(愛君如父 愛國如家)'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바탕으로 위정척사사상을 이루었다.

1846년(현종12) 화서의 문하로 들어가 스승의 잡저인 『설문습록』을 필사하는 등 수제자로 스승의 촉망을 한몸에 받으면서 『격몽요결』, 『대학장구』, 『논어집주』등을 수학하여 성리학의 기초를 습득했고 스승의 아들인 이준·이복 과 임규직·김평묵·박경수·유중교 등 동문의 선비들과 면학 궁리에 열중, 학문에 큰 진전을 보여 동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화서의 문하를 떠날 때 스승으로부터 받은 '면암(勉菴)' 두 글자는 이후 아호로 통용되었다. 22세때 다시 포천으로 이사했다.

이듬해인 1855년(철종 6)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 해 6월 승문원부정자로 임명되고 성균관전적을 거쳐 1857년(고종 2) 성균관직강으로 재직중에 모친상을 당해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탈상 후인 1868년(고종 5)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어 경복궁 토목공사로 인한 국민 부담의 가중과 당백전의 발행에 따른 재정의 파탄을 들어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상소하였다.

이대 대원군의 노여움을 사서 돈녕부도정으로 전직되었다가 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광릉 봉선사에서 독서하던 중 1870년(고종 7)승정원동부승지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뒤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1871년(고종 8)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양근 대곡으로 동문의 선비로 김평묵을 찾아가 혼란한 시국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상의한 뒤 1873년(고종10)에 올린 상소가 큰 파문을 일으켜 10년 집정의 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고종이 친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해 『동인열전』을 편찬했고 고종의 신임을 받아 동부승지를 거쳐 호조참판에 특배되었다. 그러나 실권이 민비 일족에 의해 농단되자 관직을 사퇴하는 한편 공조참판으로 시폐의 시정을 재차 상소하였다. 그러나 1873년(고종10)에 올린 상소에서 대원군인 군부를 논박했다는 죄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875년에 풀려났다. 1876년(고종13) 일본과의 통상이 논의되자 병자수호조약을 결사반대하는 지부상소 즉 5조로 된 격렬한 척사소를 올린 끝에 다시 흑산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1879년(고종 16) 유배에서 풀려나 향리에 돌아온 뒤 이듬해 호군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설악산에 들어가 몇 달을 지내고 1887년(고종24) 부친상을 당하였다.

탈상 후인 1890년(고종 27) 『화서선생문집』전질을 영조와 함께 선사하는 등 지부상소 이후 약 20년동안 재야에서 학문에만 힘쓰면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1894년(고종31) 제2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고 갑오경장으로 단발령이 내리자 이를 반대하다가 한때 투옥되기도 했다. 1898년(광무2)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임하고 12조의 시무책을 건의하여 국정을 바로잡을 것을 역설하였다.

이 해 궁내부 특진관이 되고 뒤에 중추원의관·경기도관찰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국내에 대소사건이 있을 때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하였고, 배일과 매국역신의 토멸을 강력히 주장하여 여러 차례 체포·구금을 거듭하였다.

1900년 봄 호서지방 정산으로 이사했고, 이후 몇 년간 경주를 비롯하여 명산대천을 유림하면서 비문도 짓고, 족보를 보살피기도 했다. 1905년(광무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즉각 반대 상소를 올리는 한편, 의병을 일으킬 결의를 굳게 했다. 이듬해 4월 제자인 임병찬, 임낙 등 80여명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회맹하고 궐기할 것을 결의하고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일본의 배신 16조를 규탄하는 의거소략을 배포하였다.

의거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하였고 자신도 순창에서 약 4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하고 임병찬 등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 이해 7월 대마도의 경비대 감옥에 유폐되고 말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국왕에게 보내는 유소를 제자 임병찬에게 구술하게 하고 최후의 항거로서 옥중 단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쇠약해진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하던 끝에 옥사하였다.

학문적으로 주자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스승 화서의 학통을 계승했으나 이기론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론보다는 존왕양이와 춘추대의에 입각한 실천적인 위정척사운동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주기객설', '이수기졸설'을 주장하고 심설에 있어서는 화서의 입장에서 유중교의 심설을 비판하는데 그쳤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저서로는 『면암집』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⑯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

노 영 민
포천경찰서

현행법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는 그 주재자인 검사를 보좌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수사에 있어서는 독자적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일일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명하복관계에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모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륙에서도 범죄의 다양성·광역성·기동성에 대응하여 수사활동도 전국적인 기동성·물리적 필요성·경제적 능률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술·전략 그리고 경험 등에 있어서 우수한 경찰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어느 정도 독립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예방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행해진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전자는 경찰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며, 후자는 수사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며 그 수사기관은 조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수사기관의 하나인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독립 외청으로 되어 있다. 양자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 및 지휘복종의 관계로 해석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감독의 법령상 근거로는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이 있다. 이처럼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을 부여받음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분배하는 법제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 법제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규명해야 하고,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그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에게 수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 독자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국가조직에 있어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끊임없이 문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와는 달리 수사에 있어서 경찰에게 검사와 대등한 독자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경찰수사권 독립론이 거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에 대하여 현행법하에서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이 어떠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소속에 따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수사권의 존부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과 단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사법경찰리로 나눌 수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는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과 '경사·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196조 2항의 규정 및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본다. 그리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전원 및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사법경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과 치안감 이상의 경찰고위직은 사법경찰업무에 관하여 결재는 물론 관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수사지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고위직의 지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의 규정과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한다'는 검찰청법 제46조 2항의 규정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